

의안번호	2210307
의 퇴 인	김정호 의원
회 답 일	2025.7.8.
추계번호	25B2636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0조(근로시간)	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<u>36시간</u> 을 초과할 수 없음(제1항)	의무규정
2	안 제51조의3(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)	사용자는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<u>36시간</u> 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함	의무규정
3	안 제69조(근로시간)	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, 1주에 <u>30시간</u> 을 초과하지 못함. 다만,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,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음	의무·제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~3	안 제50조(근로시간), 안 제51조의3(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), 안 제69조(근로시간)	×	• 미첨부 -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- 본문참조

2. 상세 사유

- 현행법은 성인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, 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¹⁾, 15세

1) 제50조(근로시간)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

이상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(이하 “연소근로자”)에 대하여는 1주간 근로시간이 35시간, 1일의 근로시간이 7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⁾

- 개정안은 법정근로시간을 성인근로자의 경우 주 36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하고³⁾, 연소근로자의 경우 주 30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임
- 개정안에 따른 재정 변화는 지출의 증가와 감소 요인이 혼재되어 있음
 - 첫째,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하고 있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이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의 지급 규모가 증가할 수 있으며,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인해 대체 인력이 고용될 경우 재정지출이 발생할 수 있음
 - － 그러나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될 초과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의 증가 규모와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 인력의 고용 여부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
 - 둘째, 개정안의 시행으로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자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이 변화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육아휴직급여, 출산전후휴가급여,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등의 재정지출이 변화할 수 있음
 - － 다만, 근로자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은 노사 합의 결과·경제성장률·해당 사업체의 경영실적 및 근로형태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화하며, 이에 연동되어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, 출산전후휴가급여,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등은 장래에 발생할 혼인율·출산율·재해율 등 행태변화의 영향을 받음
 - －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

2) 제69조(근로시간)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,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. 다만,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,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.

3) 안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3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.

1. 금융·보험업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및 상시 1,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: 2030년 1월 1일
2. 상시 300명 이상 1,0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: 2031년 1월 1일
3.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: 2032년 1월 1일
4. 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: 2033년 1월 1일
5. 상시 20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: 2034년 1월 1일
6. 상시 2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: 2037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

른 장래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변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여야 하나, 현시점에서 비용추계에 필요한 자료를 구체화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

-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남 희	김신애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 희	02-6788-3737	nhee@na.go.kr